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6회 제2차 정례회

**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**  
【 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1.

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

#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【 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】

## 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8.

도시환경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
【 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】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주차관리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11. 14.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
- 검토기간: 2025. 11. 14. ~ 11. 21.

### 2. 제안이유

- 송현1동 일반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며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, 인근 송현희망센터와 송현공원 이용자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및 마을 활력 증진에 기여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건립개요

- 위 치: 달서구 송현1동 287-2번지 일원
- 규 모: 주차면 22면정도, 대지면적 773.8㎡
- 사업비: 총 2,500백만원정도(주차장특별회계)
- 재원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총사업비	실시설계 용역비	공사비	보상비	비 고
2,500	39	553	1,908	

## 나. 취득대상 현황

위 치	지목	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보상추정액 (백만원)	소유자	비 고
송현동 287-2	대	342.6	342.6	1,908	개인(오**)	건물 포함
송현동 284	임야	158.1	158.1		개인(오**)	
송현동 284-11	도로	34.1	34.1		개인(오**)	
송현동 284-5	대	201.6	201.6		개인(오**)	건물 포함
송현동 284-6	도로	32.4	32.4		개인(오**)	
송현동 285-3	도로	5	5			

## 다. 추진경과

-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: 2025. 9월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: 2025. 9월
- 재정투자사업 심사 : 2025. 10월

## 라. 향후계획

- 2026년 본예산 사업비 편성: 2025. 12월
- 손실보상협의 : 2026. 1.~4월
- 실시설계용역 실시 : 2026. 5.~8월
-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: 2026. 9.~2027. 3월

## 4. 참고사항

- 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 위치도: 붙임 1
- 관계법령: 붙임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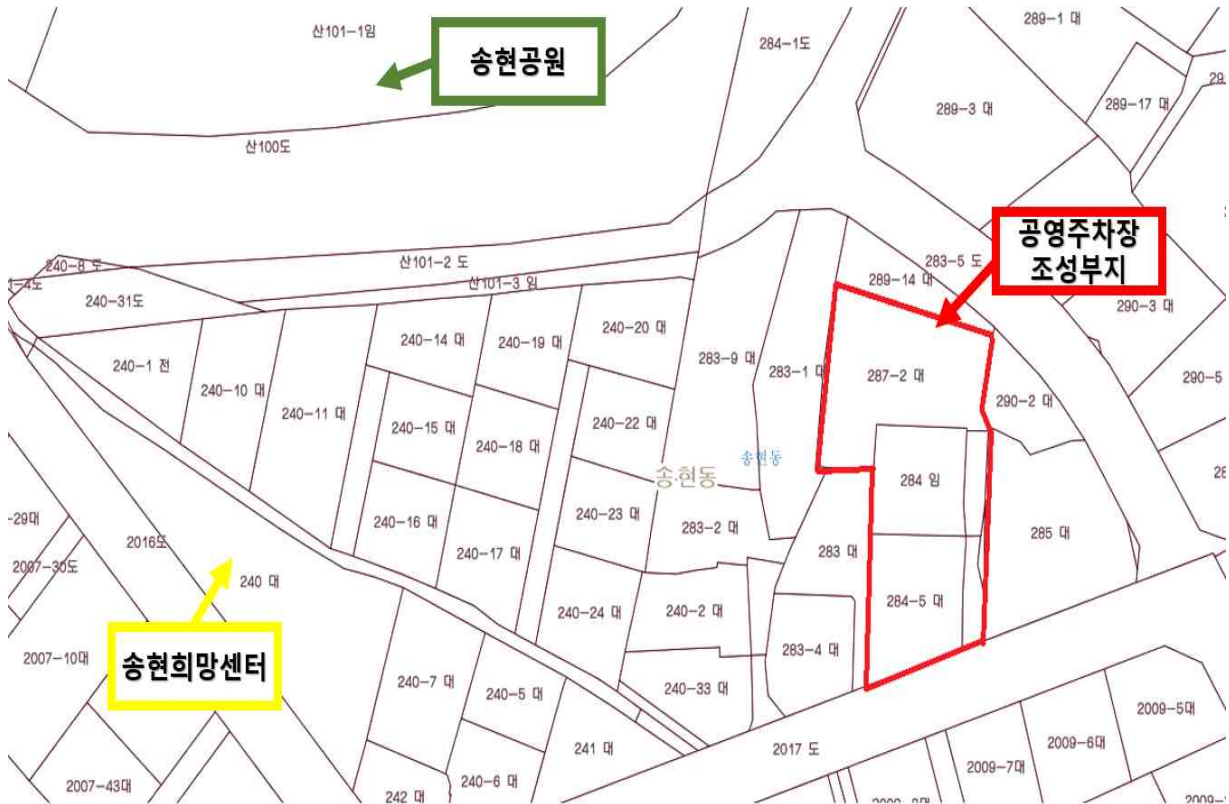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인 송현동 287-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
-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7년 3월까지 총 사업비 약 25억원(보상비 19.1, 설계비 0.4, 공사비 5.5)을 투입하여 송현동 287-2번지 일원 773.8㎡를 취득하고, 주차면 22면을 조성하는 사업임.
- 또한, 사업 대상지는 기존 든들마을 세모주차장과 연접되어 있어 향후 통합 운영 및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.
- 따라서 본 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주변 지역이 단독주택과 원룸이 밀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송현희망센터와 송현공원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에 기여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, 사업시행 시 부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**붙임 1**

**송현1동 287-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 위치도**



**□ 지방자치법**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(생략)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8. ~ 11.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□ 지방자치법 시행령**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(생략)

**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**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② ~ ⑦ (생략)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2천제곱미터